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809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6. 3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7.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2년도 세입결산으로는 세입예산 현액은 2,458억 2,370만 5천원이었으며, 당초 계획보다 670억 3,538만 2천원이 늘어난 금액이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73억 822만원이 수납되어졌고, 미수납으로 결손처분 444만 1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26억 911만 2천원이었음.

- 특별회계로는 75억 4,411만 2천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억 2,097만 3천원이었음.
- 총 세출예산 현액은 2,458억 2,370만 5천원이며, 그중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에서 예산현액 2,378억 9,741만 7천원 중 1,541억 316만 6천원이 지급되고 726억 8,873만 4천원은 이월, 나머지 111억 551만 7천원은 불용처리 되어졌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9억 2,628만 8천원중 48억 4,088만 9천원이 지급되고 6억 1,399만 4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24억 7,140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어졌으나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행동한 사후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 감독,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시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성군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3.5.19부터 6.7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 여부와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 지방세 체납액 증가사유,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 변상금·과태료의 징수 부진 이유, 시책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검토 확인하고 증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7.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